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안 번호	299
----------	-----

제출연월일 : 2005년 4월 1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 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안 제4조)
- 나. 집행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해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상황, 도정의 주요통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도민에게 공개(안 제5조)
- 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안 제7조)
- 라.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2명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 제9조)
- 마.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안 제11조)

3. 의안 전문 : 붙임

4. 관련 법령 발췌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내에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도정의 주요 통계
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6조(청구방법)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도지사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⑧심의회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심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 시청 -1편이 1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 필름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관련 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범위)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